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6454 제출연월일: 2024. 12. 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국법자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 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자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1항 중 "일시 휴업"을 "30일 이상 휴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신고 등) ① 외국법자문사	제26조(신고 등) ①
가 업무를 개시한 경우, <u>일시 휴</u>	<u>30일 이</u>
<u>업</u> 한 경우 또는 근무지를 변경	<u>상 휴업</u>
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한변	
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